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 3. 24)

1. 심사경과

- 가. 2005. 3. 17 : 사천시장제출
- 나. 2005. 3. 18 : 총무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5호)
- 다. 2005. 3. 24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민원지적과장 하두용)

가. 제안이유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조례 명칭을 변경함
 -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2)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함
 -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3) 위촉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1년 ⇒ 3년

다.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문필상)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제도가 2005. 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므로 현행조례에서 인용된 법령상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 “사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명칭을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 조례를 개정하여도 법적인 문제점 없고, 시행에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음